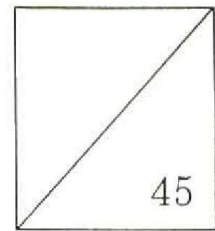


분류기호 문서번호	조약25171-	(전화번호:)	대 동 령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수신처 보존기간		홍	홍	김영삼		
시행일자	1994.5.					
관련기관 협조여부						5.26
협조 기관						
수신	내부결재		발신		통제	
제목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협정" 체결 및 공포					
1994년 5월 23일 제2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표제협정의						
체결 및 공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외무부장관 또는 주우즈베키스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표제협정에 서명함.						
2. 표제협정의 국내발효를 위하여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공포함.						
첨부: 협정안(국무회의안건) 및 공포안 각 1부. 끝.						



議案番號	第 250 號
議決 年月日	1994. 5. 23. (第 22 回)

議決事項

“大韓民國 政府와 우즈베키스탄共和國 政府간의
各自的 領域間 및 그 以遠의 航空業務에 관한 協定” 締結

提出者	國務委員 韓昇洲 (外務部長官)
提出年月日	1994. . . .

法制處 審查畢

1. 議決主文

政府는 “大韓民國 政府와 우즈베키스탄共和國 政府간의 各自의 領域간 및 그 以遠의 航空業務에 관한 協定”을 別紙와 같이 締結하기로 함. (國會 同意 필요없음)

2. 提案理由

韓·우즈베키스탄간 航空協定을 締結함으로써 우리 民間航空의 우즈베키스탄 進出의 法的基礎를 마련하여 兩國간 人的, 物的 交流擴大와 友好關係의 增進에 寄與하고자 함.

3. 主要骨子 (前文, 本文 20個條 및 附屬書로 구성)

가. 兩國의 指定航空社는 他方國 領域을 無着陸으로 飛行할 權利, 非運輸目的으로 着陸할 權利 및 合意된 路線에서 旅客, 貨物 및 郵便物을 積載, 下陸할 權利를 享有함. (第 2 條)

나. 兩國 政府는 航空機 正規裝備, 部品, 燃料 및 潤滑油 등에 대하여 相互 免稅함. (第 5 條)

- 다. 兩國의 指定航空社는 他方國內 支社設置 및 營業收益의 本國 送金 權利를 가짐. (第 7 條, 第 12 條)
- 라. 兩國은 民間航空의 安全을 위해 相互 協力함. (第 16 條)
- 마. 路線構造는 韓國內 一지점, 우즈베키스탄내 一지점을 각각 出發地點과 目的地點으로 하고, 中間地點과 以遠地點은 추후 指定하기로 함. (附屬書)

4. 主要 討議課題 : 없음.

5. 參考事項

- 가. 立法 및 豫算措置 : 別途措置 필요없음.
- 나. 關係部處 合議 : 財務部 및 交通部와 合議하였음.
- 다. 交涉經緯
 - 92. 4. 우즈베키스탄側, 協定締結 제의 및 草案 제시
 - 94. 3. 우리側, 修正案 제시
 - 94. 5. 實務交涉會談 (서울)시 文案合意 및 假署名